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50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박성준 · 허 영 · 박상혁
허종식 · 박찬대 · 김영호
전용기 · 최혁진 · 김우영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일부 경찰서에서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19 조의4 신설 등).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9조의8”을 “제19조의9”로 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8까지를 각각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9까지로 하고,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 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u>제19조의8</u> 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 ----- ----- ----- ----- ----- ----- <u>제19조의9</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u>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 죄경력 등 조회) ① 원장은 유 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 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 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u>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생 략)

②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4항
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
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
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
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
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
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
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
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
히 퇴직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
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현행 제19조의4와 같음)

<u>제19조의5</u>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생략)	<u>제19조의6</u>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행 제19조의5와 같음)
<u>제19조의6</u>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생략)	<u>제19조의7</u>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현행 제19조의6 과 같음)
<u>제19조의7</u> (유치원회계의 설치) (생략)	<u>제19조의8</u> (유치원회계의 설치) (현행 제19조의7과 같음)
<u>제19조의8</u> (유치원회계의 운영) (생략)	<u>제19조의9</u> (유치원회계의 운영) (현행 제19조의8과 같음)